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33회 임시회 (2019. 9. 2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에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국모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19-134
- 나. 제 안 자: 이흥민 의원 외 7명
- 다. 제안일자: 2019년 9월 17일(화)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9월 17일(화)

2. 제안이유

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거리예술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 시 공연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거리예술가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조항 신설(안 제6조제2항)
 - 공연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음 등 피해 예방 및 공연 제한에 관한 사항

4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: 2019. 9. 11. ~ 2019. 9. 16.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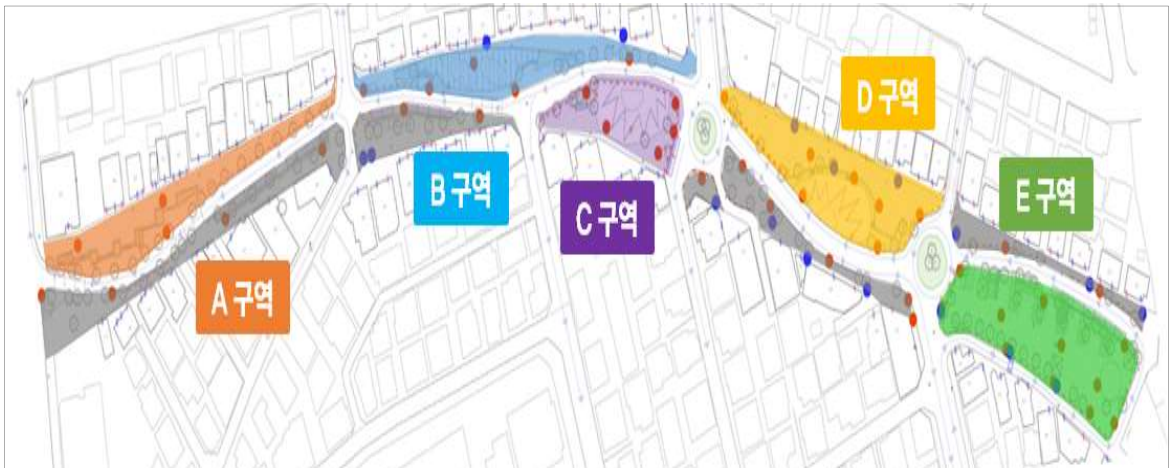
-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마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동 조례안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거리공연 활동 활성화를 촉진하여 많은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자유로운

창작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함.

- 특히, 지난 2015년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버스킹 존(Busking Zone)을 지정한 이후 전국의 예술가의 공연을 유치하는 등 마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음.

□ 참고자료 1 〈홍대 걷고 싶은 거리 현황〉

- 위 치 : 마포구 어울마당로 107~155-1
- 규 모 : 5개 구역 / [폭] 15~45m, [길이] 500m



A구역 (버스킹존)	B구역 (야외전시존)	C구역 (광장무대)	D구역 (여행무대)	E구역 (만남의 광장)
5개 공간	야외전시 공간	버스킹, 공공캠페인 공간		만남의 광장

- 그러나, 거리공연 특성상 공연시간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다수의 관객이 모이는 관계로 인근 지역 주민의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,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개정안 제 6조(거리예술가 준수사항)제2항에 주민의 소음 등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거리예술가의 활동시간·장소와 공연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종합 검토 의견

- 아래 참고자료 2 <사용 승인 현황>을 살펴보면 거리공연 횟수가 2015년 189건에서 2018년 4,69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음, 통행불편 등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2건에서 75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홍익지구대 접수 건은 2019년 한 해에만 3,000여 건에 달하고 있음을 참고자료 3 <민원 현황>에서 확인할 수 있음.
- 이러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공연문화 육성을 위해 「소음·진동 관리법」 등 관련 법규에 의한 공연 제한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동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거리예술의 활동 시간 및 장소 제한 조항의 신설로 인해 거리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, 집행부에서는 거리공연 일정, 허가 시간, 공연 책임자 등 공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☐ 참고자료 2 <사용 승인 현황>

구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승인건수	189	137	1,159	4,695
운영장소	2개소	2개소	4개소	4개소

※ 홍대 걸고싶은 거리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 공사 : '16.10.~'17.6.(공연장 사용불가)

☐ 참고자료 3 <민원 현황(2015년 ~ 2019년 현재)> *유선민원 제외

접수기관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
관광과	12건	15건	31건	53건	75건
홍익지구대	▶ 홍대 관련 소음신고 최근 1년간 총 3,010건 ⇒ 22:00~06:00, 2,138건, 71%차지 ⇒ 소음신고 통고처분(인근소란 등) 37건				

【 관련 법령 】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

제21조(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(산업단지나 그 밖에 **환경부령**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, 이하 "생활소음·진동"이라 한다)을 규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9. 6. 9., 2013. 8. 13.>

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**환경부령**으로 정한다

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

제20조(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) ①**법제21조제1항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"**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
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. 다만, 산업단지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.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
3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
4. 생활소음·진동이 발생하는 공장·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(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), 운동·휴양 시설 등이 없는 지역

②**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**

1. 확성기에 의한 소음(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)
2.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
3.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
4. 공장·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·진동

③**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.**